

2023년 제1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변경공고

2023년도 제1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고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제1·2차 병합시험)	
				1차	2차
9급	시설	일반토목	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1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 1형)

시험명	직 급	시험기간	비고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60분	3과목, 비공개(시험종료 후 가져갈 수 없음.)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사전 인성검사 실시
-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함
 - 시험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결격사유 등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해당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삭제 <2022. 1. 4.>
 - 바. 삭제 <2022. 1. 4.>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시설	일반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09. 18.(월) ~ 10. 03.(화)	10. 04.(수) ~ 10. 06.(금) [취소마감일 : 10. 10.(화)]	서류전형	-	-	10. 11.(수)
		필기시험	10. 11.(수)	10. 13.(금)	10. 16.(월)
		인성검사	-	10. 18.(수)	비대면 개별실시(PC)
		면접시험	10. 16.(월)	10. 25.(수)	10. 27.(금)

- ※ 1. 합격자 발표 및 구체적인 세부일정 안내 : 고성군 홈페이지(www.gwgs.go.kr) 공고 및 개별 문자 발송
2.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4.(수) ~ 10. 6.(금) 09:00~18:00
- 장 소 :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사팀(2층)
-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제출 전 고성군청 신관 1층 허가민원과에서 고성군 수입증지(5,000원)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총무행정관 인사팀(우 24735)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확인을 위해 총무행정관 인사팀으로 확인 전화 필수
- 접수 마감일 다음 날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요망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5,000원) 구입하여 동봉

※ 담당자 연락처 : ☎033-680-3242

※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 시간 유의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고 군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장에서 배부

6.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1호】
2	응시원서	◦ 수수료 : 고성군 수입증지 첨부 (5,000원 상당) ◦ 구입장소 : 고성군청 신관1층 허가민원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증명서 첨부)	【별지 2호】
3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남자)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이 력 서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별지 3호】
5	자기소개서	◦ 2~3매 이내 제출	【별지 4호】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5호】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해당자에 한함
8	자격증 사본	◦ 공고문에 명시된 선발직류별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8. 유의사항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군정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아래 코로나 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면접시험 응시 불가로 인한 불합격)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지정된 시험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시험일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절대 응시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시험의 모든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합니다.
-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행정관 인사팀(☎680-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